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한성수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5나20654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규정된 '투자자와 사전 협의후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경우'란 상장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유리한 시점에 상장하기 위하여 투자자와의 협의에 따라 상장 추진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단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제3자의 투자자에 대한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문언의 내용,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과 채무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역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지급하기로 한 돈의 성격이 제3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1조에서 '대주주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거래종결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까지(단, 투자자와 협의하는 경우 12개월 연장 가능) 상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피고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상회사의 상장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 채무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약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상회사가 상장하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약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